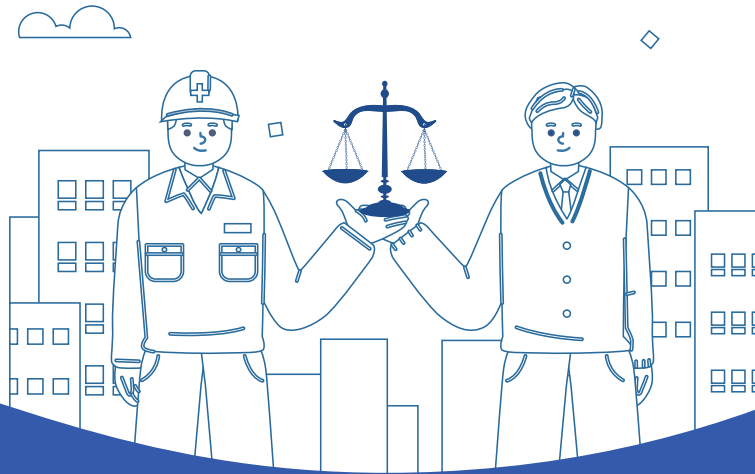


제22회 보건안전포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방안

- 일시 2023. 7. 6.(목) 09:00
- 장소 킨텍스 2전시관 301호
- 주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 후원 안전보건공단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Health & Safety

인사말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장
가톨릭대 교수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제22회 보건안전포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방안’행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를 해 주시는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님,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안전보건사업이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표와 사회, 진행을 맡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대수 국회의원실의 윤창현 선임비서관님이 오셔서 당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안전보건관리자의 부담이 무척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내용도 위험성평가를 기본으로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되려면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의 부담감이 증가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보건관리자의 경우에는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업무 부담이 더욱 많았겠지만 이제는 중대재해 감축에 힘을 보태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중대재해 예방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방안

- 일시 : 2023. 7. 6. (목) 오전 9시
- 장소 : 킨텍스 2전시관 301호
- 주관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 후원 : 안전보건공단



| 참가 신청 |

- 사전등록
(링크 주소 : <https://naver.me/GcWz2VfU>)

사전등록 QR 코드



| 프로그램 |

시간	주제	발표자
09:00 ~ 09:30	등록	[사회: 정태성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이사]
09:30 ~ 10:00	국민의례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인사말	
	축사	
10:00 ~ 10:20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10:20 ~ 10:40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인력 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찬규 삼영기업 과장
10:40 ~ 11:00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 처벌 현황 및 대응방안	김한영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변호사)
11:00 ~ 11:20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육성 및 지원 방안	윤창혁 선임비서관 박대수 국회의원실
11:20 ~ 11:40	안전관리자 자유발언대	[진행: 최종국 HL D&I 현라 안전보건팀장]
11:40 ~ 12:00	보건관리자 자유발언대	

목차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인력 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정찬규 삼영기업 과장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 처벌 현황 및 대응방안** 37
김찬영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변호사)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육성 및 지원 방안** 47
윤창혁 선임비서관 박대수 국회의원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2023. 7. 6. (목)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 혜 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Contents

-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 문제점
-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개선방안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 법적 기준




안전, 보건관리자의 정의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1)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1. 광업	50명~500명 미만	1명 이상
2~20. 제조업	500명 이상	2명 이상
2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출판업		
23. 폐기물 처리업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자동차 수리업		
26. 발전업		
27. 운수 및 창고업		
28. 농업, 임업 및 어업	50명~1천명 미만	1명 이상
29. 2~21호 이외의 제조업	1천명 이상	2명 이상
30~42. 서비스업		
43. 보건업		
44~46. 기타 서비스업		
47~48.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현업업무 종사자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단서 조항은 편의상 생략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2)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49. 건설업	50억원~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1,500억원~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2,200억원~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3천억원~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3,900억원~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4,900억원~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6천억원~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7,200억원~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8,500억원~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 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
		-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안전관리자 수의 1/2이상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단서 조항은 편의상 생략함)



보건관리자 선임기준(1)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1. 광업	50명~500명 미만	1명 이상
2. 가공업	500명~2천명 미만	2명 이상
3~19. 제조업	2천명 이상	2명 이상
20.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수리업		
22. 유해물질 제조 및 사용업		
23. 2~22호 제외한 제조업	50명~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50명~5천명 미만	1명 이상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호 경우 100명~5천명 미만)	
26~36. 서비스업	5천명 이상	2명 이상
37~38.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중 현업업무 종사자		
39. 41~43. 기타 서비스업		
40. 보건업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 (단서 조항은 편의상 생략함)



보건관리자 선임기준(2)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 공사는 1천억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 1천억원)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근로자 600명 기준으로 600명 추가 될 때마다 1명 추가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 (단서 조항은 편의상 생략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특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 제3호
- 보건관리자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관리자 법정 최소인원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직업병예방, 근로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보건관리자 자격자의 취업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고용부, 국회전문위원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
- 2021년 6월 노사두리시스템에 따르면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2.4% 수준
- 총 249개 : 제조업, 기타업종 227개, 건설업 22개

대한건설협회 등

- 보건관리자 채용을 늘릴 경우 안전관리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등 기업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 문제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문제점

기준	내용
업종	• 산업재해 위험도에 따른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의 재구분
수	• 산업분류별 위험성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 차등화 필요성 검토 • 상시근로자에 따라 <u>적정한 안전관리자 수 결정</u>
자격	• 고위험 업종에는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전문성을 지닌 자가 선임되는 규정 마련 필요 • 자격과 경험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자격기준 마련
업무 및 권한	•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 안전관리자의 현장 및 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고려
전담	• 전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전담에 대한 업무권한 및 범위 명시 • 적은 상시근로자 수 규모에도 위험도에 따른 전담 업무 차등화의 적절성 확인
위탁 여부	• 위탁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 규모(300명 이상)와 적정성 검토 •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위험성에 따른 위탁제한 필요성 검토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외부 컨설팅 측면의 정기적 위탁 활용 촉진
조직 체계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와 조직체계 정비 •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관계를 조직체계에 명시하여, 안전담당업무 조직구조를 확대 • 도급-수급업체의 원청 안전관리자 역할 및 권한 명시화(e.g. 안전보건조정자) 검토
사업장 특성	• 사업장 면적, 공장 레이아웃(job shop, flow shop), 도급관계,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장 소재지 및 거리(15킬로미터 이내) 등

• 출처 : 한국안전학회(2021).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의 문제점

인원수	- 1990년~1997년 :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 인원을 1~3명까지 선임하도록 정하였음. - 1997년~현재 : 보건관리자 인원을 1~2명으로 정함. - 보건관리자 수 부족
선임업종	- 시대적 변화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 - 콜센터(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감정노동, 감염병관리 등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매우 필요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필요
업무	- 보건관리자의 업무량 증가, 최근 신규업무 지소적으로 발생 • 2018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법 신설, 지하철 등 라돈 관리 • 2019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 • 2020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관리 업무 • 2021 : 급식종사자 폐암, 중처법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관리 • 202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300인 이상 AED 비치, 관리 • 2023 : 위험성평가 및 자기규율예방체계 강화 • 최근 : 기후변화로 미세먼지, 폭염, 한파 건강문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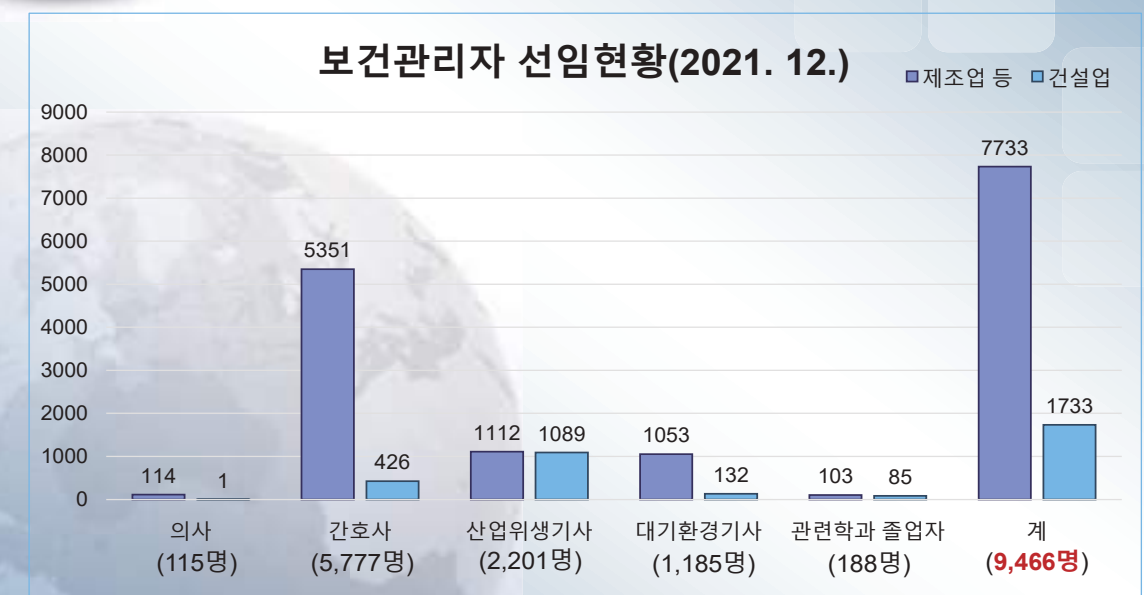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 출처 : 안전보건공단(2023). 통합자료실, 국가승인통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인원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2023). 보건관리자 선임현황.



안전, 보건관리자 미선임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더.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3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호 안전관리자, 3호 보건관리자)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개선방안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

-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제대로 된 현황파악 필요**
- **전산화된 작업**으로 통계오류 발생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
- 선임보고 뿐 아니라, **퇴임보고 필요**
(퇴임보고 조항 없어 이중선임, 미선임에 대한 관리 미비)
- 미선임 시,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엄격하게 집행**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통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업종	규모	수	업종	규모	수
광업 제조업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광업 제조업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2명 이상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보건업, 창고업 등)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2천명 이상	2명 이상
	1천명 이상	2명 이상	기타 제조업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서비스업 (보건업, 창고업 등)	50명 이상 5천명 미만	1명 이상
	(중략)			5천명 이상	2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활성화

✓ 역할

-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 역할 수행

✓ 분야

- 산업보건지도사 중 산업간호 분야 필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의학 분야	산업위생 분야



건설업 보건관리자 경력관리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
- 기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기준」 별표1 자격취득자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종류 및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 관리	가스 관리안전 기계안전	가스	가스 관리안전	가스 관리안전	가스
	안전관리관리 소방		안전관리관리 소방	안전관리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전기 화공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안전관리관리 소방		안전관리관리 소방	안전관리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전기 화공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안전관리관리 소방		안전관리관리 소방	안전관리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전기 화공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비파괴검사 관련 조력
환경 건설 지원	환경관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환경관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환경관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방안(1)

기준	강화 내용
업종	• 산업재해율에 따라 업종들을 위험군(1군~4군)으로 구분
수	• 위험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선임 수 차등화 • 주간, 야간 순환조가 있는 기업 현황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차별화 • 정기적으로 20명 이상 50명 미만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 및 20명 이상 50명 미만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업종 확대(단, 초기에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활성화 시행)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장과 행정인력 구분을 고려한 안전관리자 선임 수 확대
자격	• 위험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선임방법에 포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관리양성교육 사업 추진 • 안전관리자(시행령 제17조 [별표 4])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시행령 제24조)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자격 사항 추진 • 경험과 경력에 따라 자격증 사항 적용면제 또는 완화 •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안전지도사 선임 의무화를 통해 예방활동 수준 강화
업무 및 권한	• 안전관리자 업무를 현장 인력과 행정 인력으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 •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상 지정된 안전관리 업무 의무의 근로감독 강화

- 출처 : 한국안전학회(2021).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방안(2)

기준	강화 내용
전담	• 고위험군의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에는 안전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 • 종원 등의 예외 규정(법 제17조제4항)에 전담업무 부여까지 포함하여 규제
위탁 여부	• 고위험군은 30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 못하도록 규제 • 50명 미만 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 및 주요 대상 차별화 • 안전관리자 전담 사업장이자 300명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정기 외부건설당(안전진단) 의무화
조직 체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체제 강화 • 도급사업장의 경우, 원청 안전관리자의 수급업체 감독 권한 강화를 통한 도급-수급 안전관리 조직 체계 정비(e.g. 안전보건조정자) • 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안전 관련 관리자와의 조직적 관계 및 역할 조정
사업장 특성	• 위험군에 따라 사업장 면적, 공장 레이아웃(job shop, flow shop), 도급관계를 고려한 안전관리자 선임 차등화 • 지역 또는 사업장 거리 등에 대한 공동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개정하여, 고위험군 사업장에는 1인 안전관리자 1 사업장 체제를 의무화

- 출처 : 한국안전학회(2021).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 인력 양성(1)

안전보건 인력 양성

- ✓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 명 이상 추가 양성**
 - 現 안전관리 위탁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약 1.9만 개소)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목표
 - 전문대학에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일학습병행 교육 과정 확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 신설 및 교과목 확충 추진
 - 안전보건·공학 등 관련 강의과목 이수 실적과 안전보건 관리자 자격 기준 연계·검토

* 출처 : 고용노동부(202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보건 인력 양성(2)

안전보건 인력 지원

- ✓ 2026년까지 업종·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 마련
 -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선임 시, 재정지원 검토
 -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 등을 '안전보건 인력뱅크'로 운영
 - 지역 고용센터와 연계, 안전관리자 구인 필요 기업에 우선 채용지원

* 출처 : 고용노동부(202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보건 인력 양성(3)

산업안전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 ✓ **추진현황**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 3. 7.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출범식 개최
- ✓ **배경** :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던 경력직 근로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 건설·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인력난 심각
- ✓ **목적** : 산업안전보건 분야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화해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함
- ✓ **활동내용** :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하고 업종별·직무별 인력 수요와 숙련 수준을 파악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할 방침
- ✓ **운영방법** :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단체와 근로자단체 참여



안전보건인력지원 특별법 필요(1)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벤치마킹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목적**
 -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산업안전보건인력지원법 제정 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원활한 안전보건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산업안전보건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전보건인력지원 특별법 필요(2)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주요내용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 (제7조) 실태조사
- (제8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제9조)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관리
- (제10조)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 (제11조)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 (제14조) 보건의료 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 (제15조) 조사, 연구사업
- (제1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제17조)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지원

의사소통 채널

- 지역별 네트워크
- 전국대회, 포창 등
- 온라인 소통 채널
- 의견 전달 창구 마련

교육기회 확대

- 법정 보수교육 시기 개편
- 2년 24시간 → 1년 12시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 지원

업무 전산화

- 안전, 보건관리자 업무내용 표준화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 개발

정규직 채용 가점

- 정규직 채용 시 감독에서 가점
- 중소기업사업장 전담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한보총의 역할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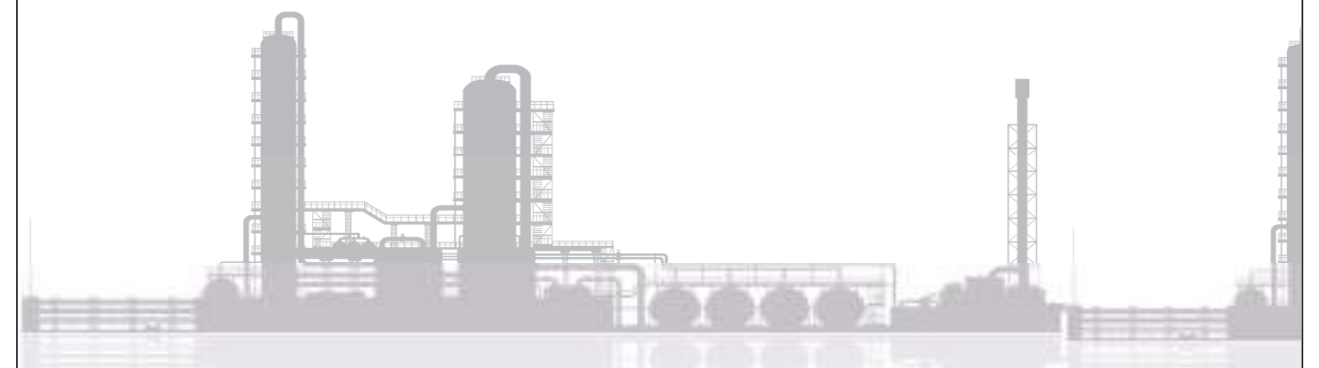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인력 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찬규
삼영기업 과장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인력확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

CONTENTS

01 안전보건관리자 취업 실태

02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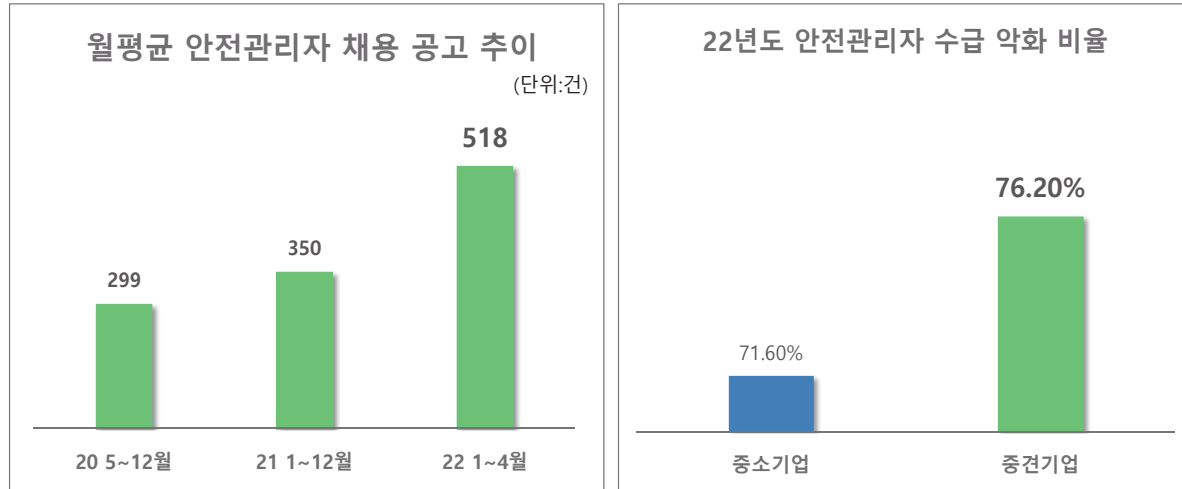
03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구축



01 안전보건관리자 취업 실태



■ 안전관리자 채용공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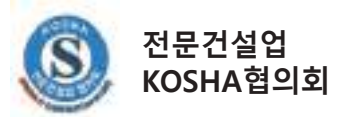
자료 : 인크루트

자료 : 건설산업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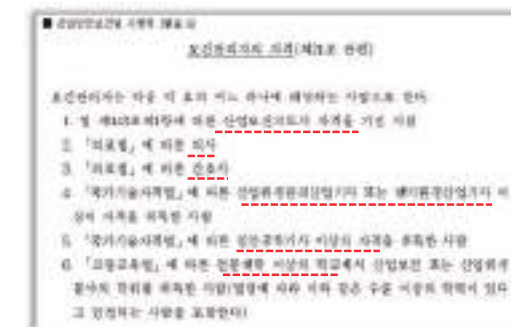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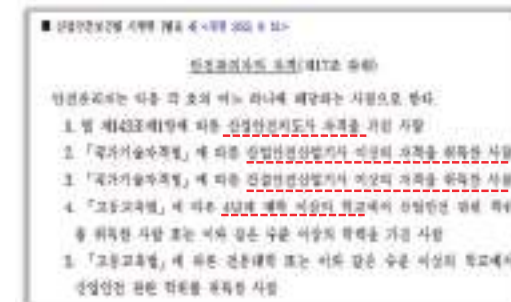
“ 취업 지원자수 자체 감소 의견 많다. ”

-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 비율 차지
- 주된 원인 : “대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 형사 처벌 위험성 기피”, “타 산업 채용 증가”

01 안전보건관리자 취업 실태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사항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부칙 제 2조 (단위: 원)

공사금액	배치기준	추가조항	비고
50억이상	1명 이상 (선임)	23년 7월1일 이후 착공 현장	협력업체 공사금액 100억 이상 시 1명이상 선임
60억이상		22년 7월1일 이후 착공 현장	
80억이상		21년 7월1일 이후 착공 현장	
100억이상		23년 7월1일 이후 착공 현장	
120억이상		20년 7월 이전까지 적용	협력업체 공사금액 120억 이상 시 1명 이상 선임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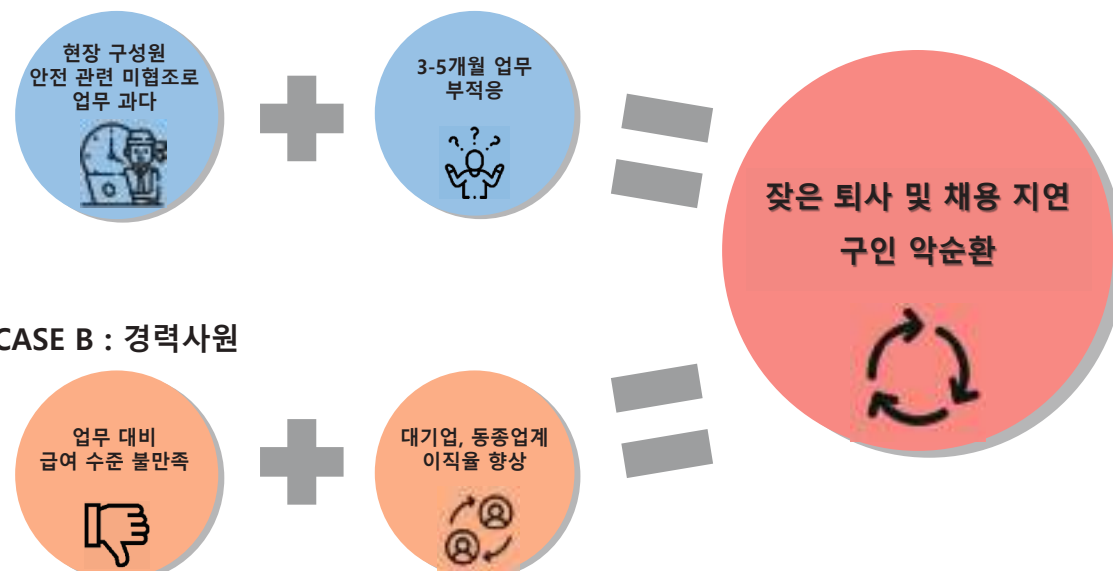
공사금액	배치기준	추가기준	비고
800억이상	1명 이상 (선임)	1,400억이상 증가 및 (상시 600명 기준 / 600명추가) 1명씩 추가	-

01 안전보건관리자 취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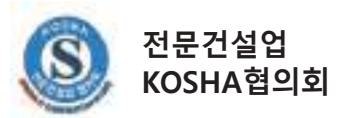


■ 전문건설업 안전관리자 구인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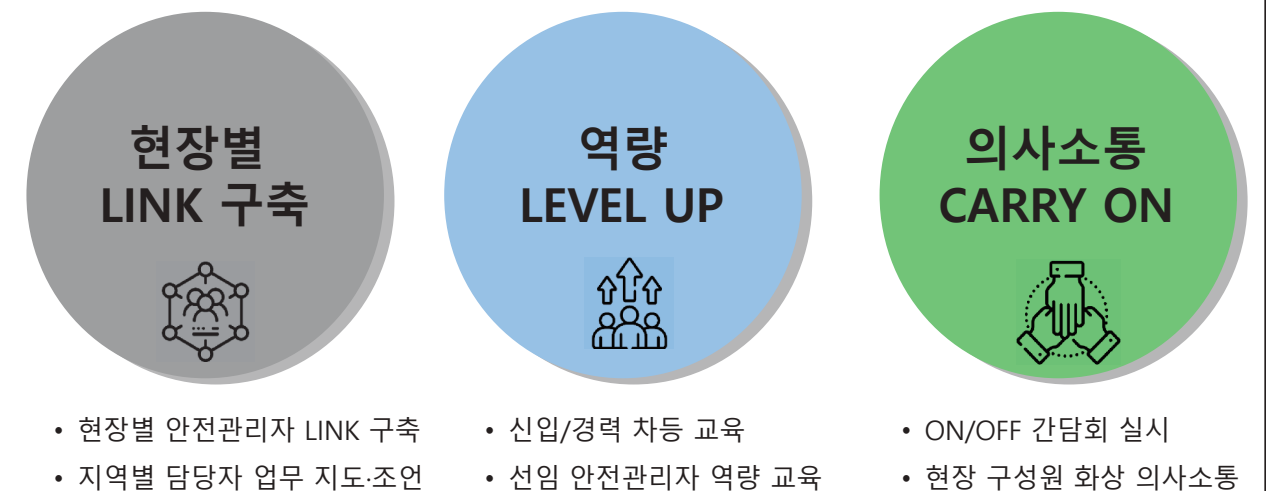
CASE A : 신입사원



02.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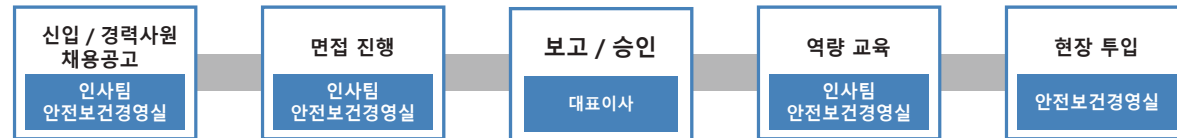
■ 삼영기업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목표



02.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 안전관리자 채용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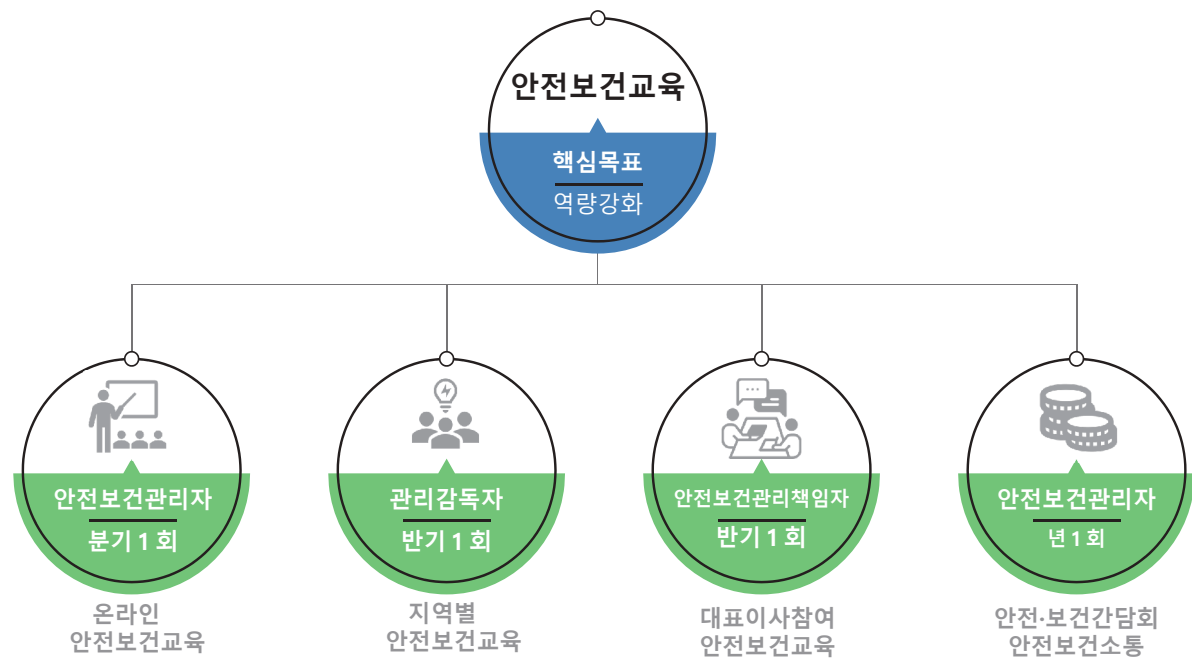
■ 역량 LEVEL UP Process



03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 안전보건관계자 분기 / 반기별 교육 실시



03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구축



■ 안전·보건관리자 지원구축



End of Document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 처벌 현황 및 대응방안

김찬영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

2023. 7. 6.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 처벌현황 및 대응방안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본사무소

발표자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변호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김찬영 대표 변호사 / 노무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고위과정 수료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 변호사
- 現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現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회의 심의위원
- 現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現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現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 現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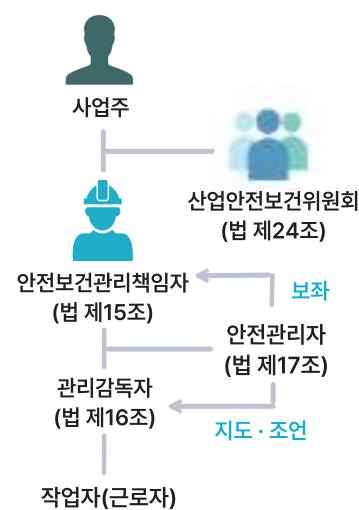
목차

- 01 안전관리자의 역할
- 02 첫 중대재해 신고 사건에서의 안전관리자 처벌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
- 03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벌
- 04 대응 방안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 안전관리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 체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 안전관리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명 이상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500명 미만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명 이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I. 첫 중대재해 신고 사건에서의 안전관리자 처벌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주 문
피고인 권○○, 김○○을 각 형액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아○○○○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종○○○○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정○○을 형액 1년 6월에, 피고인 정○○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권○○, 김○○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정○○에 대한 벌금부과에 대하여는 정수 300,000원(1일도 초과)을 기간 피고인 정○○을 30%감액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종○○○○, 정○○에 대하여 위 각 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안전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벌금 500만원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I. 첫 중대재해 선고 사건에서의 안전관리자 처벌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을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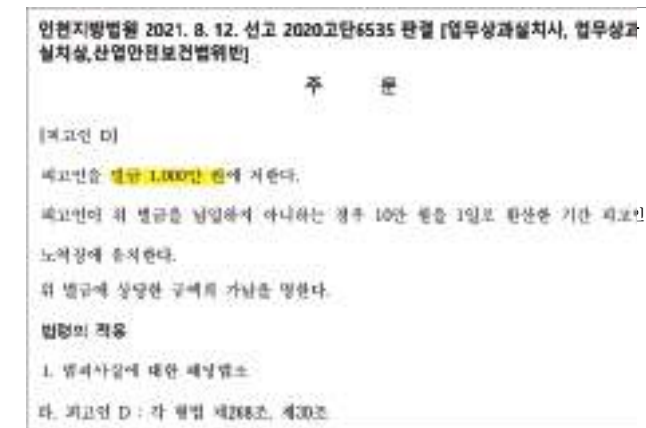
그러나

안전관리자는 형법을
적용받아 처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II.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벌

사례2)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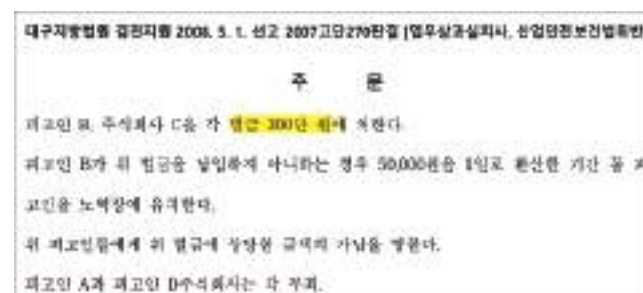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리책임 업무 전
반은 담당하였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 있
지 아니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
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II.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벌

사례1)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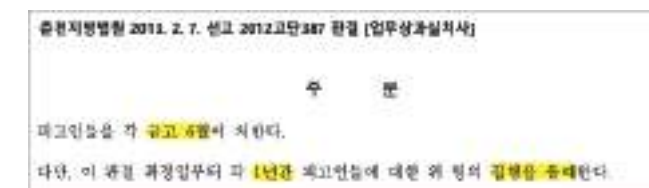


안전관리자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업무상 과실
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II.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벌

사례3)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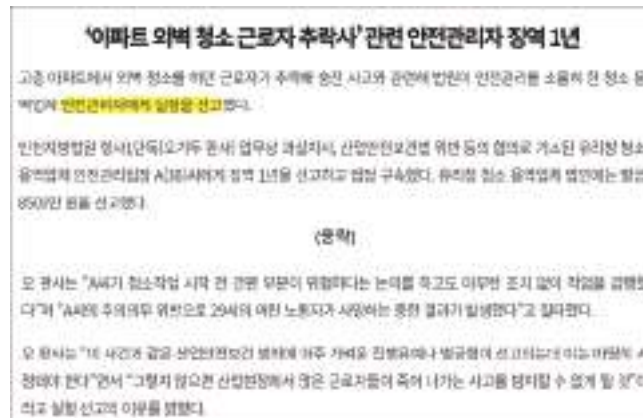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금고 6
월,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 선고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II.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벌

사례4)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사례



안전관리자가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
실이 있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실형 선고**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II.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벌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도 및 조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낮음

✓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자에게 실질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

✓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
독하지 못해 사망(부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V.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X**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제대로 수행 **X**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V. 대응 방안

✓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 ➡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정지 2년 가능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취소 가능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IV. 대응 방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



01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를 설득하여 체계를
마련해야 함



0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03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조치 지시를 한다면

서류를 남겨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행했다는 사실을 입증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육성 및 지원 방안

윤창혁

선임비서관 박대수 국회의원실

감사합니다

H smartlawfirm.kr

E kcylawyer@naver.com

M 010 - 2651 - 3577

T 02 - 6746 - 0008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710,711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제22회 보건안전포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방안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Health & Safety